####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6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최형두・박성민・김예지

김석기 · 정동만 · 엄태영

김미애 • 인요한 • 김종양

신성범 · 서천호 · 김소희

조경태 · 서범수 · 김상훈

성일종 • 이종욱 • 송석준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2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항을 삭제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90조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파법」의 개정)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이의신청 등)"을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따른"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를 "6개월 이내의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 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
<u>청)</u> ① (생 략)	<u>청 특례)</u>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u>다.</u>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u>&lt;삭 제&gt;</u>
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	
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 정 안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 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 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 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 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
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④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u> 준용한다.</u>
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령으로 정한다.
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	
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

 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 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는 제53조 또는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 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 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경우</u>

-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 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	제7조의2(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	대한 이의신청 특례) <삭 제>
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	
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u>있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 </u>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
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u>액 결정에 대한</u>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	
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
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③ (생략)

<u>6개</u>
월 이내의 생산중지·수입중지
·판매중지·사용중지
<u>.</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청해과 간으)